

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

의 안	
변 호	

제출년월일 : 2025년 4월 10일

제 출 자 :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집행 기간 : 2024. 3. ~ 12.

나. 집행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	집행예정액					잔액	집행내역
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계		
미디어아트 관광 콘텐츠 운영	800,000	-	558,491	3,331	238,178	800,000	-	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기획·개발, 연출 및 관람 환경 조성, 현장 운영 및 사업 홍보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 :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제3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: 제안근거 1부. 끝.

※ 작성자 : 서울관광재단 기획예산팀 노준식 팀장 (☎ 3788-8137)

기획예산팀 방지수 대리 (☎ 3788-0856)

붙임

제안근거 _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

- ①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출자·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 <신설 2019. 9. 26>